

2026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본 책자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2026년 안양시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6년 예산현황

2026년 안양시 예산은 일반회계 16,542억원, 특별회계 2,098억원으로 총 18,640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5.95%인 1,0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8,640**억원

2025년 **17,593**억원

일반회계

16,542억원

88.74%

2026년 총 예산
18,640억원

11.26%

특별회계

2,098억원

상수도사업 **659**억원

하수도사업 **900**억원

공영개발사업 **42**억원

도시재생사업 **9**억원

도시개발사업 **66**억원

도시교통사업 **352**억원

의료급여기금 **49**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21**억원

□ 일반회계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인고 기초적인 행정 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 특별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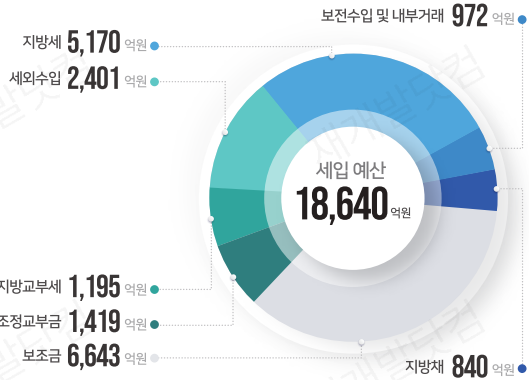
세입·세출 예산



세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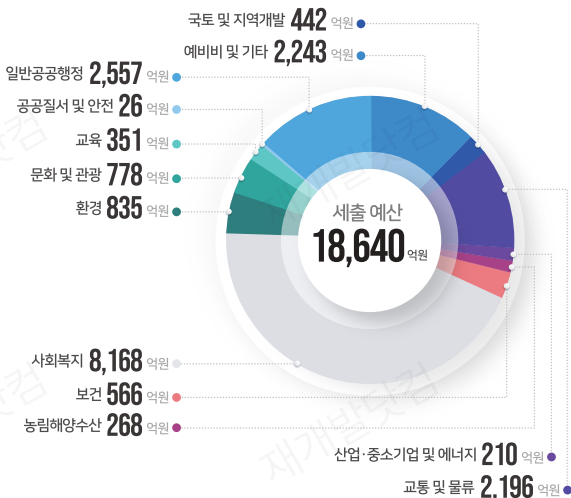
구 분	비 중
계	100.00%
지방세	27.74%
세외수입	12.88%
지방교부세	6.41%
조정교부금	7.61%
보조금	35.64%
지방채	4.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1%



- ☐ 자체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우리시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 및 수입
-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년도 잉여금 및 다른 회계나 기금 등과 거래한 돈



세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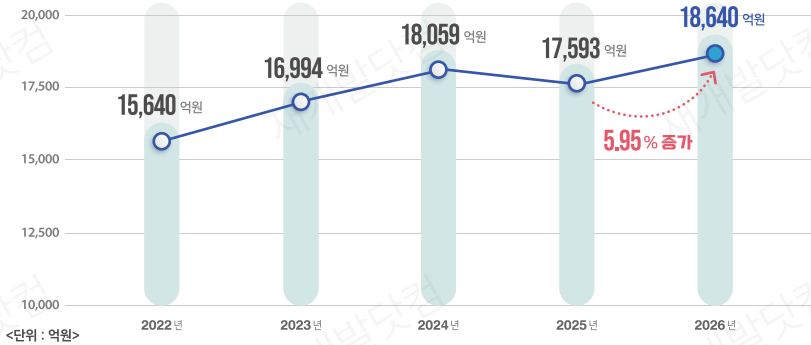


구 분	비 중
계	100.00%
일반공공행정	13.72%
공공질서 및 안전	0.14%
교육	1.88%
문화 및 관광	4.17%
환경	4.48%
사회복지	43.82%
보건	3.03%
농림해양수산	1.4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3%
교통 및 물류	11.78%
국토 및 지역개발	2.37%
예비비 및 기타	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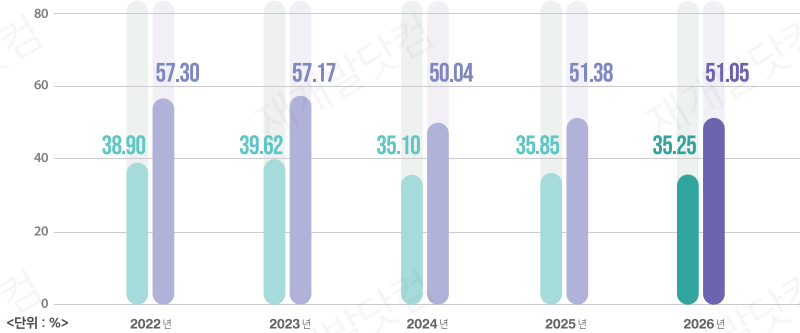
2026년 안양시 재정현황은 어떨까요?



최근 5년 간 재정규모 ▼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



□ 재정자립도

-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함
-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 재정자주도

-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함
-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함



CONTENT

Ⅰ. 지방세 개요

1. 지방세 개념	010
2. 지방세 구조	011
3. 세목별 신고·납부안내	012
4. 월별 납부 일정	013
5. 세율 일람표	014
6. 지방세 용어의 이해	019

Ⅱ. 세목별 안내

1. 취득세	022
2. 등록면허세	030
3. 레저세	033
4. 지방소비세	034
5. 지역자원시설세	035
6. 지방교육세	037
7. 주민세	038
8. 재산세	040
9. 자동차세	044
10. 담배소비세	047
11. 지방소득세	049

Ⅲ.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054
2. 지방세법	055
3. 지방세징수법	060
4. 지방세특례제한법	061

Ⅳ.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1. 지방세 주요감면제도	064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068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069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70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071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4
7.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076

Ⅴ. 법인과관련 종과세 제도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종과	080
2. 대도시 내 법인 종과	081
3.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종과	083
4. 세율의 적용	083
5.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084

Ⅵ. 지방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란	086
2. 세무조사 목적	086
3. 세무조사 종류	086
4. 세무조사 법적근거	087
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088
6. 세무조사 실시	088

Ⅶ.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092
2. 이의 신청, 심판 청구	092
3. 감사원 심사청구	094
4. 행정 소송	094
5. 납세 보호관 제도	095
6. 선정대리인 제도	096

Ⅷ. 유용한 세금 정보

1.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098
2. 제증명 발급 안내	100
3. 지방세 체납시 제재	103
4. 지방세 신고·납부안내	104
5. 모바일 전자송달	106
6.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108
7. 마을세무사 제도	108
8. 안양시 세무상담 전화번호	110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I. 지방세 개요



- 1. 지방세 개념
- 2. 지방세 구조
- 3. 세목별 신고·납부안내
- 4. 월별 납부 일정
- 5. 세율 일람표
- 6. 지방세 용어의 이해

010

011

012

013

014

019



1. 지방세 개념



▶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

▶ 용도

-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교육 등 주민 생활 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

▶ 법적 근거

-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 공통적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한 지방세관계법임.

- 특별시세
광역시세



3. 세목별 신고·납부안내



세 목		납부방법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 전 등기·등록 시 : 등기·등록일 전까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 등록하기 전까지
	면허분	신고납부	▶ [수시] 면허신청·변경 시
		보통징수	▶ [정기] 매년 1.16. ~ 1.31.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토지	보통징수	▶ 매년 9.16. ~ 9.30.
	건축물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주택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9.16. ~ 9.30, ※ 각 1/2씩
자동차세	소유분	보통징수	▶ [정기] 매년 6.16. ~ 6.30./ 12.16. ~ 12.31.
		신고납부	▶ [연납] 매년 1월, 3월, 6월, 9월 말일까지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신고납부	▶ [종합·퇴직]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법인소득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소방분	보통징수	▶ 재산세 납부기한과 동일 ※ 재산세 본세와 함께 과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기와 동일 ※ 본세와 함께 과세
		보통징수	▶ 보통징수세목의 납부기한과 동일 ※ 본세와 함께 과세

4. 월별 납부 일정



월 별	지방세 납부 일정	신고·납부기한
1월	-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9월말 결산법인)	▶ 1.16. ~ 1.31. ▶ 1.16. ~ 1.31. ▶ ~ 1.31.
3월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 3.16. ~ 3.31.
4월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12월말 결산법인)	▶ ~ 4.30.
5월	-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분)	▶ ~ 5.31.
6월	- [보통징수] 자동차세(1기분)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 6.16. ~ 6.30. ▶ 6.16. ~ 6.30.
7월	- [보통징수] 재산세(건축물, 주택1/2)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3월말 결산법인)	▶ 7.16. ~ 7.31. ▶ ~ 7.31.
8월	- [신고납부] 주민세(사업소분) -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 8.1. ~ 8.31. ▶ 8.16. ~ 8.31.
9월	- [보통징수] 재산세(토지, 주택1/2)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 9.16. ~ 9.30. ▶ 9.16. ~ 9.30.
10월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6월말 결산법인)	▶ ~ 10.31.
12월	- [보통징수] 자동차세(2기분)	▶ 12.16. ~ 12.31.
매월	-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신고납부] 레저세 -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말일 ▶ ~ 다음달 20일
수시	- [신고납부] 취득세 -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고/보통] 자동차세(수시분) ※ 일할계산 -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취득일 ~ 60일 이내 ▶ 등록 시 ▶ 면허신청·변경 시 ▶ 양도·말소 시 ▶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5. 서울 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취득세	부동산	상속	▶ [농지] 2.3% ▶ [농지외] 2.8%
		무상취득	▶ 3.5% ※ 비영리사업자 : 2.8%
		원시취득	▶ 2.8%
		공유물 분할	▶ 2.3%
		합유물, 총유물 분할	▶ 2.3%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3% ▶ [농지외] 4%
		주택유상거래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left(\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격} \times \frac{2}{3\text{억원}} - 3 \right) \times \frac{1}{100}$ ▶ [9억원 초과] 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선박	상속	▶ 2.5%
		무상취득	▶ 3% ※ 상속 제외
		원시취득	▶ 2.02%
		수입 및 주문건조	▶ 2.02%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3%
	소형선박	소형선박	▶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그 외의 선박	▶ 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경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4% ▶ [영업용] 4%
		그 외 자동차	▶ 2%
		기계장비	▶ 3% ※ 미등록대상 : 2%
	항공기	항공기	▶ 2%
		그 밖의 항공기	▶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2.01%

5. 서울 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취득세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 2%
	과점주주		▶ 2%
등록 면허세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 0.8%
		소유권 이전 등기	▶ [유상] 2% ※ 주택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00분의 50 ▶ [무상] 1.5% ※ 상속 : 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0.2%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선박	소유권 등기·등록	▶ 0.02%
		저당권 설정	▶ 0.2%
		그 밖의 등기·등록	▶ 건당 15,000원
	차량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2% ▶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 / 영업용 2%
		저당권 설정	▶ 0.2%
		운수업체 등록 등	▶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 1%
		저당권 설정	▶ 0.2%
		기계장비대여업체 등록 등	▶ 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0.01%
		그 외	▶ 0.02%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담보권 설정	▶ 0.1%
		그 밖의 등록	▶ 건당 9,000원

5. 서울 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등록 면허세	법인	영리법인 등	▶ [설립] 0.4% ※ 최저세액 : 112,500원 ▶ [자본·출자증가] 0.4%
		비영리법인	▶ [설립] 0.2% ▶ [자본·출자증가]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기타 등기·등록		▶ 건당 3,000원 ~ 135,000원
	면허		▶ 4,500원 ~ 67,500원 ※ 종별(1종~5종), 시·군별 차등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금액		▶ 10%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액(국세)		▶ 25.3% ※ 민간최종 소비지출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주민세	개인분		▶ 10,000원 이하
	사업소분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	▶ 50,000원 ~ 20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 면세점 : 연면적 330㎡ 이하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초과(1㎡당 500원)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 0.5% ※ 면세점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 8,000만원 이하
	개인	종합소득	▶ 0.6% ~ 4.5%
		양도소득	▶ 0.6% ~ 7%
	법인		▶ 1% ~ 2.5%
	특별징수		▶ 10%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 0.2% ~ 0.5%
		별도합산과세	▶ 0.2% ~ 0.4%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그 밖의 토지] 0.2%

5. 서울 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재산세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	▶ 4%
		특별·광역시 내 공장	▶ 0.5%
		그 밖의 건축물	▶ 0.25%
	주택	별장	▶ 〈삭제〉 개정 〈23. 3. 14〉
		그 밖의 주택	▶ 0.1% ~ 0.4% ※ 1세대 1주택(9억 이하) : 0.05% ~ 0.35%
자동차세	도시지역분		▶ 0.14%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승용	영업용	▶ cc당 18원 ~ 24원
		비영업용	▶ cc당 80원 ~ 200원
	그 밖의 승용	영업용	▶ 20,000원
		비영업용	▶ 100,000원
	승합	영업용	▶ 25,000원 ~ 100,000원
		비영업용	▶ 65,000원 ~ 115,000원
	화물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특수	영업용	▶ 13,500원 ~ 36,000원
		비영업용	▶ 58,500원 ~ 157,500원
	3륜 이하 소형	영업용	▶ 3,300원
		비영업용	▶ 18,000원
담배 소비세	피우는 담배	1종, 궤련	▶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3종, 엽궤련	▶ 1g당 103원
		4종, 각련	▶ 1g당 36원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 [연초·연초고형물] 궤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 1g당 88원
		6종, 물담배	▶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5. 서울 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지역 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 10m ² 당 2원
		지하수	▶ 10m ² 당 20원 ~ 200원
		지하자원	▶ 0.5%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 1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1 kwh당 1원
		화력발전	▶ 1 kwh당 0.7원 ※ 단,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1kwh당 0.6원
		폐기물	▶ 1톤당 6천원
	소방분		▶ 0.04% ~ 0.12%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20%
	레저세액		▶ 40%
	담배소비세액		▶ 43.99%
	주민세액(개인·사업소분)		▶ 10%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재산세액		▶ 20%
	자동차세액		▶ 30%
농어촌 특별세 (국세)	취득세액		▶ 10%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세액		▶ 20% ※ 감면조항에 따라 비교세 규정○
	레저세액		▶ 20%

6. 지방세 용어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함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함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등을 말함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함
세율	세(稅)를 부담하는 비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때에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음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총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있음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함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함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함

6. 지방세 용어의 이해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등이 해당됨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됨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함		
특별징수 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세율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및 증가산금 (現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하고,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을 증가산금이라고함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2024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되었고, 시행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가산금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산금을 적용함		
	구 분	가 산 세	
	무신고가산세	단순 무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사기·부정 무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40%
	과소신고가산세	단순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세액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 고지 전*	1일 0.022% (舊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1회 3% (舊 가산금)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매월 0.66% (舊 증가산금)**	
* 미납, 과소납부, 초과환급분 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납세고지일·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체납처분비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함		
체납자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체납액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함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II. 세목별 안내



Q 1. 취득세	022
Q 2. 등록면허세	030
Q 3. 레저세	033
Q 4. 지방소비세	034
Q 5. 지역자원시설세	035
Q 6. 지방교육세	037
Q 7. 주민세	038
Q 8. 재산세	040
Q 9. 자동차세	044
Q 10. 담배소비세	047
Q 11. 지방소득세	049

1. 취득세



▶ 취득의 개념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 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7)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 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로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 납세지 (지방세법 §8)

-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
-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 소재지 ※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입 목 : 입목 소재지
- 광업권 : 광구 소재지
- 어업권·양식업권 : 어장 소재지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1. 취득세



▶ 과세표준 (지방세법 §10~§10조의6)

- 취득 당시의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2)

-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거래가액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택일
- 기타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채무 외 부분은 무상취득의 방법에 따라 적용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3)

-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4)

-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
-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무상·유상승계·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0조의5)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교환 : 이전받는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가액
- 양도담보 :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 (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
다만,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함)
-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10조의6)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 건축물 개수의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총가액×지분율(또는 증가비율)

1. 취득세



▶ 취득의 종류 및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20)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 취득	-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상승계 취득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량·기계 장비· 항공기 및 선박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 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24.1.1.부터 금융리스(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만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1. 취득세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 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1. 취득세



▶ **세율** (지방세법 §11, §12)

1.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	농지	▶ 23/1,000																										
		농지 이외	▶ 28/1,000																										
	증여, 무상취득		▶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 30/1,000																										
농지 이외		▶ 40/1,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개인)	6억원 이하	▶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left(\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 \right) \times \frac{1}{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예시〉 <table><tr><td>취득가액</td><td>×</td><td>조정율</td><td>=</td><td>취득세율</td></tr><tr><td>(6억원 × 2/3억원 - 3) × 1/100</td><td></td><td></td><td></td><td>1.0000%</td></tr><tr><td>(7억원 × 2/3억원 - 3) × 1/100</td><td></td><td></td><td></td><td>1.6667%</td></tr><tr><td>(8억원 × 2/3억원 - 3) × 1/100</td><td></td><td></td><td></td><td>2.3333%</td></tr><tr><td>(9억원 × 2/3억원 - 3) × 1/100</td><td></td><td></td><td></td><td>3.0000%</td></tr></table>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억원 × 2/3억원 - 3) × 1/100				1.0000%	(7억원 × 2/3억원 - 3) × 1/100				1.6667%	(8억원 × 2/3억원 - 3) × 1/100				2.3333%	(9억원 × 2/3억원 - 3) × 1/100				3.0000%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억원 × 2/3억원 - 3) × 1/100				1.0000%																							
	(7억원 × 2/3억원 - 3) × 1/100				1.6667%																								
	(8억원 × 2/3억원 - 3) × 1/100				2.3333%																								
(9억원 × 2/3억원 - 3) × 1/100				3.0000%																									
9억원 초과	30/1,000																												
개인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1% ~ 3%)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 외																										
	2주택	8%	1 ~ 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 취득세



참고

1세대 1주택 계산 사례

(1) 주택 수의 가산 범위(§13조의3)

- 신탁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

(2) 1세대의 범위(지법령 §28조의3)

- ①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②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가능 (미성년자는 제외)
-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한분이 65세 이상이면 해당)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위 ②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 가능

(3) 일시적 2주택 기간(지법령 §28조의5 및 §36조의3)

-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함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가산
예)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

2. 중과세율(지방세법 §13) ※ 중과기준세율 : 2%

구 분	세 율
①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도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배)
②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③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 표준세율
⑤ 골짜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배)
⑥ ①과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⑦ ②와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1. 취득세



3. 종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정 (지방세법 §13)

- 제1호 : 종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종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4. 서울의 특례 (지방세법 §15)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 취득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자경 농민 감면대상 농지), 법인 합병, 공유물·합유물 분할, 건축물의 이전, 재산분할 등	▶ 표준세율 - 종과기준세율
② 간주 취득 등 - 개수,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등	▶ 종과기준세율

※ 취득물건이 종과에 해당하는 경우 종과세 적용

▶ 면세점 (지방세법 §17)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징수 (지방세법 §18, 20)

- 징수방법 : 신고·납부 방법
- 세액의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속(실종) : 상속개시일(실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 취득 후 종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1. 취득세



▶ 부족세액 추정 및 가산세 (지방세법 §21, 지방세기본법 §53~55)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함

구 분			가산세율
신고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 20%
		부정 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 10%
		부정 과소신고	▶ 40%
	중가산세	미등기 전매	▶ 80%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	▶ 1일 0.022% ※ 2018.12.31.까지 1일 0.03% ※ 2022.06.06.까지 1일 0.025%

▶ 비과세 (지방세법 §9)

- 국가 등의 취득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제외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임시은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대수전은 취득세 부과
- 상속개시 전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차량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2.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24)

- 등록분 : 등록을 하는 자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면허분 :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 받는 자를 포함)
※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 납세지 (지방세법 §25)

- 등록분 : 재산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분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 (지방세법 §27)

- 등록분
 - 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
 - ※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 채권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 면허분 : 면허의 종류

▶ 세율 (지방세법 §28, 34)

1. 면허분

구 분	세 율		
	인구 50만 이상 시(안양시)	그 밖의 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2. 등록면허세



2. 등록분

① 부동산등기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	0.80%
소유권의 이전	유상	부동산 가액	2.00%
	무상	부동산 가액	1.50%
	상속	부동산 가액	0.80%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 가액	0.20%
저당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0.20%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0%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0%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 (가등기 한정)	0.20%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 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② 법인등기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 율
㉔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0%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0%
㉕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0%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0%
㉖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0%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매1건당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 됨

※ ㉔~㉖의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

※ 대도시 내 등기는 3배 증가

2. 등록면허세



③ 부동산·법인등기 이외의 등기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과세대상	과세원인		
자동차	소유권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가액 5.0%, (경차)2.0%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3.0%, (경차)2.0%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가액 2.0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0%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기계장비가액 1.00%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 0.20%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0,0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취득		매 1건당 78,700원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 1건당 12,000원
저작권	상속		매 1건당 6,000원
	상속 외 등록	프로그램 등	매 1건당 20,000원
		이 외	매 1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3,000원
특허권 등	상속이전		매 1건당 12,000원
	그 밖의 이전		매 1건당 18,000원
상표·서비스표	설정 및 갱신		매 1건당 7,600원
	이전	상속	매 1건당 12,000원
		그 밖의 이전	매 1건당 18,000원
기타			매 1건당 12,000원

▶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30, 35)

• 등록분

-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 등록 후 종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 후 추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면허분

- (수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시 납부 가능
- (정기) 매년 1. 16. ~ 1. 31. <보통징수>
 -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1년 초과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봄

2. 등록면허세



▶ 비과세 (지방세법 §26)

- 등록분
 -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 행정구역의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면허분
 -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

3. 레저세



▶ 과세대상 (지방세법 §40)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41)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납세지 (지방세법 §43)

- 경륜등의 사업장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의 장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42)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

3. 레저세



▶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43)

-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차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신고납부 단,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신설 이후 5년간 그 경륜장 등 소재지에 8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20%를 신고납부

4. 지방소비세



▶ 과세대상 (지방세법 §65)

-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66)

-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납세지 (지방세법 §67)

-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

▶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 §68)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69)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25.3%〈개정〉
※ '22년 23.7% → '23년 25.3%

▶ 신고납부 및 납입 (지방세법 §70, 71)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경정·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5. 지역자원시설세



▶ 목적 (지방세법 §141)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

▶ 과세대상 (지방세법 §142)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 양수발전용수 제외
 - 지하수 :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 용천수 포함, 농어촌용수 등 제외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 석탄,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 제외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 환적·연안수송·화물 미적재 컨테이너 제외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농어촌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제외
 -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신규, 2026.7.1.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
※ 돌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함
- 소방분
 - 건축물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 선박 ※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146)

- 특정자원분

구 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세율 / 과표	10m ³ 당 2원	음용수 : 200원 / m ³ 목욕용 : 100원 / m ³ 기 타 : 20원 / m ³	재취가액의 0.50%

- 특정시설분

구 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
세율 / 과표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발전량 kwh당 1원	발전량 kwh당 0.7원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5.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 건축물 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0.04 ~ 0.12%)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①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②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 및 11층 이상 건축물 3배 중과세

▶ 부과·징수 등 (지방세법 §147)

-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신고납부
 - ※ 지하수는 보통징수 가능
 - 다음달 말일까지
- 소방분 : 보통징수
 - ※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
- 소액 징수면제(지방세법 §148)
 - 지역자원시설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 비과세(지방세법 §145)
 -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6. 지방교육세



▶ 목적 (지방세법 §149)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자원 확보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50)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자
 - ※ 자동차 제외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의 납세의무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 소유 제외

▶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151)

과세표준	표준세율	비 고
취득세액	2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	
레저세액	40%	
주민세 개인분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10%	▶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액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자동차세액	30%	▶ 비영업용 승용차분
담배소비세액	43.99%	

▶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152)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7. 주민세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24)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1년 미만 외국인 등 제외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
※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자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지 (지방세법 §76)

- 개인분 : 주소지
- 사업소분 :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비과세 (지방세법 §77)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78 등)

세 목		과세표준		주민세 세율	지방교육세
개인분		—		- 10,000원 이하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500원
사업소분	기본 세율	법인사업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30억원 이하	50,000원	12,5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25,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12,500원
		개인사업자	—	50,000원	12,5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①)		-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증가(1㎡당 500원)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②)		0.50%	—

7. 주민세



- 사업소 연면적(㉠) 제외 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종업원 급여총액(㉡) 제외 대상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종업원의 범위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 국외근무자 제외
 - ※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봄

▶ 면세점 (지방세법 §82, 84의4)

-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기본세율[5만원~20만원]만 부과)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8천만원 이하

▶ 징수방법 등 (지방세법 §79, 83, 84의6)

- 개 인 분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1. ~ 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 (납기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8. 재산세



▶ 과세대상 (지방세법 §105)

-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07)

- 원칙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그 소유자
- 예외
 -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미신고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미신고한 경우
 - : 공부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그 사용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납세지 (지방세법 §108)

- 토지, 건축물, 주택 :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 선박 : 선적항의 소재지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 ※ 선적항이 없는 경우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의 소재지
 - ※ 미등록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지방세법 §111, §111의2)

과세대상 및 구분			비 고
토지	종합 합산과세	5,000만원 이하	▶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0.3%)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0.5%)
	별도 합산과세	2억원 이하	▶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0.3%)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그 밖의 토지		▶ 0.2%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	▶ 4%
		특·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	▶ 0.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 1.2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 5년간 5배 증가
		그 밖의 건축물	▶ 0.25%
		주택	▶ 0.1%
주택	그 밖의 주택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0.25%)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0.4%)
	1세대 1주택 특례 (~26년까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限	6천만원 이하	▶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0.2%)
		3억원 초과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0.35%)
		선박	▶ 5%
	선박	고급선박	▶ 5%
그 밖의 선박		▶ 0.3%	
항공기		-	▶ 0.3%



▶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지방세법 §106)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시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3)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1)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2)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증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6)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7)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8)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액 $\times 0.14\%$ ※ 재산세액(본세)에 합산하여 과세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토지는 제외)
 - 건축물, 주택, 선박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산정) $\times 0.04\% \sim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times 20\%$

▶ 납기 및 징수방법 (지방세법 §115, 116)

- 납기
 -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토지, 주택 1/2 : 매년 9.16. ~ 9.30.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19)

- 재산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 **비과세** (지방세법 §109)

-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제외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하는 재산
 -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외
-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
 -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제외
 - 도로(대지 안의 공지 제외), 하천, 제방(특정인의 전용 제외), 구거, 유지, 묘지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적 목적의 것
 - 임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물 부분 한정)
 - ※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임시건축물, 철거명령 건축물 제외)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는 제외

▶ **재산세 물납 및 분납제도** (지방세법 §117, 118)

1. 물납제도

- (1) 대상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만 물납 가능) ※ 납부세액 기준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2) 절차



(3)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봄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에 한함.)

8. 재산세



2. 분납제도

- (1) 대상 : 동일 시·군 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 기준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 (2) 신청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3) 납부기한 :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 (4)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세법 §124)

1. 과세제도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소유분 자동차세 (지방세법 §124)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자동차를 소유한 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 ①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② 연장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부

9. 자동차세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127, 136)

①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세액 감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④ 화물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⑤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⑥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9. 자동차세



▶ 납기 및 징수방법 (지방세법 §128, 135)

① 정기분

구 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 기	징수방법
제1기분	1월 ~ 6월	매년 6. 1.	매년 6. 16. ~ 6. 30.	보통징수
제2기분	7월 ~ 12월	매년 12. 1.	매년 12. 16. ~ 12. 31.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② 수시분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 이전등록 · 말소등록 시 이전등록일 · 말소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 과세 ↔ 비과세(감면) 전환 시, 영업용 ↔ 비영업용 전환 시 일할계산

▶ 연세액 신고납부 (지방세법 §128)

- 납세자의 신청으로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 연세액 신고납부	1월 (1. 16. ~ 1. 31.)	연 세액의 약 4.57% 공제
3월 연세액 신고납부	3월 (3. 16. ~ 3. 31.)	연 세액의 약 3.76% 공제
6월 연세액 신고납부	6월 (6. 16. ~ 6. 30.)	연 세액의 약 2.52% 공제
9월 연세액 신고납부	9월 (9. 16. ~ 9. 30.)	연 세액의 약 1.25% 공제

※ 자동차세 연납 개정('21년부터 시행)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공제기간 및 연납공제율 조정

▶ 비과세 (지방세법 §126)

- 국가 등이 국방 · 경호 · 경비 · 교통 · 순찰 · 소방 등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국가 등이 환자수송 · 청소 · 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세법 §135~140)

-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업자)
- 서울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서울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서울의 3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령에 따라 26%의 조정세율을 적용함
- 신고납부
 - 정유업자 : 반출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10. 담배소비세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49)

- 담배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사람

▶ 납세지 (지방세법 §50)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외국으로부터 담배 반입한 자]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 [그 외] 담배를 제조한 장소,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 과세표준 (지방세법 §51)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 §48, 52)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쥘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 당		36원
	제3종 엽쥘련	1g 당		103원
	제4종 각련	1g 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 니코틴용액 1㎖ 당		628원
		②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쥘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 1g 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 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 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 당		26원

▶ 신고 및 납부 등 (지방세법 §60)

- 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

* 안분기준 : 전년도 판매량

10. 담배소비세



▶ 가산세 (지방세법 §61)

- 사용계획서 미제출, 기장의무 미이행 등 : 10%
- 반출된 담배의 타용도 사용 등 : 30%

▶ 미납세 반출 (지방세법 §53)

-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등
-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등

▶ 과세면제 (지방세법 §54)

- 수출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의 군인 등에 대한 판매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 등



11.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86, 89)

구 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
법인지방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징수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율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방세법 §87)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지방세법 §88)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매년 1.1. ~ 12.31.
-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91 등) <개정>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개인 지방 소득	종합 소득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동일한 금액	1,400만원 이하			▶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만4천원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2%)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5%)
	퇴직 소득		—			▶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12×근속 연수
	양도 소득	국 내 자 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임차권	보유기간 1년~2년 미만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6%
					그 외	4%
			보유기간 1년미만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7%
					그 외 (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
			상기 외			▶ 종합소득세율

11. 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개인 지방 소득	양도 소득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동일한 금액	국 내 자 산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1%
				부동산과다소유법인 주식		▶ 종합소득세율+1%
				미등기양도자산		▶ 7%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2년 미만은 위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 종합소득세율+2%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 종합소득세율+3%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보유 수의 합 3이상			
	국 외 자 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종합소득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법인 지방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억원 이하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2%)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 10%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개정규정은 20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세부내역 58p 참고)

11.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및 기한 (지방세법 §9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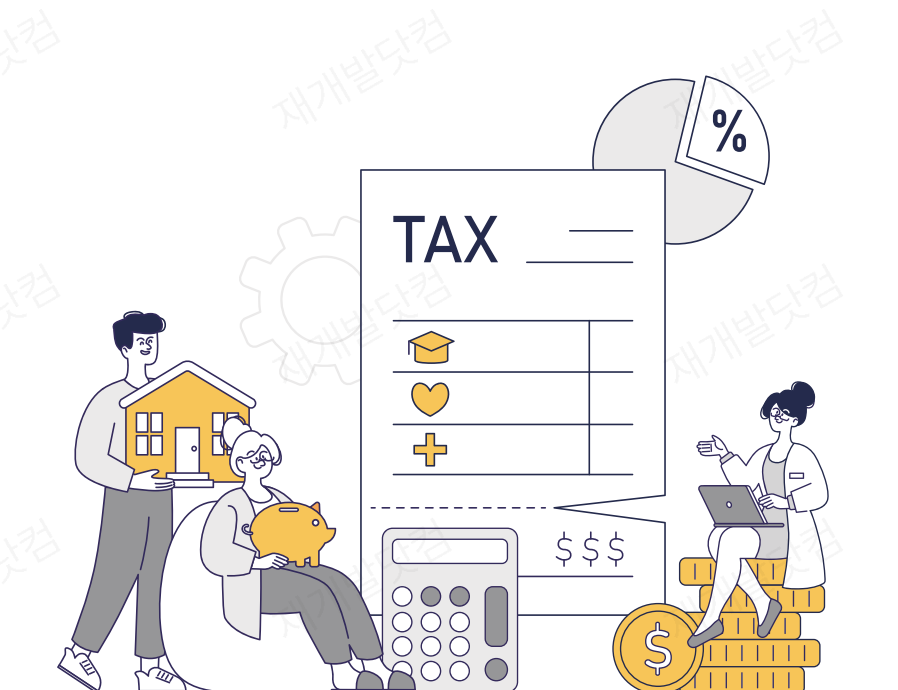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 ※ 납세지 외(전국) 신고접수 가능
 - ※ 지자체장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납부서 발송 가능, 납부 시 신고 인정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발송 가능, 납부 시 신고 인정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03의60)

- 지방소득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 비과세 (지방세법 §90)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Ⅲ.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054

2. 지방세법

055

3. 지방세징수법

060

4. 지방세특례제한법

061



1.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법 §83⑥)

개정 전	개정 후
▶ 세무조사 사전통지 ○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 ○ 사전통지 기한 :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 (현행과 같음) ○ 사전통지 기한 : - 세무조사의 경우 : 20일전 - 과세전전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7일 전

[개정 내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사전통지 기간 축소

[적용 요령]

26.1.1.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법 §83⑦, 법§108-2)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신 설>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화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 세무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세무공무원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 **MAX(위반건수×50만원, 500만원) ※ 2천만원 한도

[개정 내용]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 세무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징수)

[적용 요령]

26.1.1. 이법 시행 이후 적용

2. 지방세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증여의제

개정 전	개정 후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취득 시 유상세율 적용 사유 ○ (원칙) 무상세율 ※ 증여의제 ○ (예외) 유상세율 유상세율 적용 사유 ① 공매,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 취득 ②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 취득 ③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 교환 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취득 인정범위 ○ <신설>	▶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기준 신설 ○ (좌동) ○ (예외) 유상세율 유상세율 적용 사유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 (단신설) 시가인정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 유상취득에서 배제하는 지급대가와 차액 불인정 기준 신설 ○ 시가인정액* - 지급대가 ① 3억원 이상 또는 ②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개정 내용]

- (법§7⑪)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을 유상거래시 그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 배제(증여의제)
- (영§11의 3) 유상세율 적용 배제 기준을 지급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이상으로 함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법§10의3②)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법 제7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특수 관계인간 유상거래 시 부당행위 계산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

[적용 요령]

26.1.1.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지방세법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판단기준 개선 (영§14의2)

개정 전	개정 후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 부동산 등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 등) 취득 시 가액기준 불비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1. 상속 : 시가표준액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 3. 그 외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시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기준 개선 ○ 부동산 등의 일부(지분 또는 부속토지 등) 취득 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일부 지분 취득 시 →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 시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개정 내용]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판단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전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 산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더라도 전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

[적용 요령]

26.1.1.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종과세 추징 절차 등 보안 (법§20②·③, §21①·영 §34)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 취득 이후 종과세 해당 시 신고납부기한 기산일 ○ (신고·납부절차) 없음(추징) ○ (납부세액) - 과소납부세액* + 가산세 부과** * 종과세를 적용세액 - 기납부세액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 주택 취득시 종과 제외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 ○ (신고·납부절차) 신설*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세액) - 과소납부세액 + 가산세 없음
▶ 주택 취득 이후 종과세 해당 시 신고납부기한 기산일	▶ 취득 이후 법인 주택 등 종과세 신고납부에 따른 기산일 신설

- <신설> (영§34)
(제 6호 가목 ~ 카목 신설)
(제 7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저가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제 8호 신설)
※ 임대목적 소형·저가 오피스텔
(제 9호 신설)
- 일시적 2주택 기간, 종전주택 정의 등
(영§36의3)
- 법인 등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 배제 사유 발생 등
- 중과 예외 조건 미충족으로 중과 전환 및 주택 수 포함: 해당 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주택): 해당사유 발생일
-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주택 수 포함(오피스텔): 해당 사유 발생일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등 미처분: 일시적 2주택 기간 경과일
- <삭제>

[개정 내용]

- 주택 중과세 예외 요건이 배제되는 사유 발생* 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없음.

* 멸실예정 주택의 멸실·신축·판매 기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의 경과 등

※ 비과세·감면 추정 및 과밀억제권역·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 등과 동일하게 부족세액 등을 일정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적용 요령]

- 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 등이 26.1.1.전에 취득한 주택이 26.1.1.이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급여 등 ○ <신 설>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 (좌동) ○ (좌동) ○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 급여

[개정 내용]

출산전후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적용 요령]

26.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지방세법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법§103의19)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법인세법」제 57조의 2

[개정 내용]

국세(소득세)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자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설

* 세전소득 환원방식 : ①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② 세액공제 시, 외국납부세액만큼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적용 요령]

26.1.1.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0조)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법§103의20③)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 (일반법인)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 <td>2억원 이하</td><td>0.9%</td></tr> <tr> <td>2억원 ~ 200억원</td><td>1.9%</td></tr> <tr> <td>200억원 ~ 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 <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 <td>200억원 ~ 3,000억원</td><td>2.1%</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 (좌동)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 <td>2억원 이하</td><td>1.0%</td></tr> <tr> <td>2억원 ~ 200억원</td><td>2.0%</td></tr> <tr> <td>200억원 ~ 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좌동)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 <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억원 ~ 3,000억원</td><td>2.2%</td></tr> <tr> <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2. 지방세법



[개정 내용]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이전 수준으로 환원(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상향)함에 따라,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국세의 10%수준) 상향 조정

[적용 요령]

2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확대 (영§103의2)

개정 전	개정 후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의 토지

[개정 내용]

사실상 건축물 등이 철거·멸실된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 1년으로 확대

[적용 요령]

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화력발전에 대한 연료별 차등 세율 적용 (법§146②제3호)

개정 전	개정 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단일 세율 적용 - 발전량 당 : 0.6원 /kWh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연료별 차등세율 적용 - LNG 연료 : 0.6원/kWh - 일반(유연탄 등) : 0.7원/kWh

[개정 내용]

-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 액화천연가스(LP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현행 세율(0.6원/kWh)을 유지하되, 유연탄 등 이용 시 세율을 0.1원 인상(0.6 → 0.7원/kWh)

[적용 요령]

26.1.1.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세징수법



▶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법§40, 41)

개정 전	개정 후
▶ 압류금지 재산 ○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등 < 신 설 >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41) - 농업, 어업, 직업 등 생업유지를 위한 기계·기구 등	▶ 대상 확대 및 조문체계 통일 ○ 압류 금지 재산의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신체 보조기구, 장애인 감면 적용 경형자동차, 재해방지 또는 보안관련 물건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부금, 우편대체 포함) ○ §40이관(압류금지재산 통합) - 농업, 어업, 직업 등 생업유지를 위한 기계·기구 등

[개정 내용]

- 타법과 일치하게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압류금지 재산으로 일원화(조문체계 통일)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을 반영하여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재산 구체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었던 농업·어업·직업 또는 사업용 기계 및 기구(생업유지를 위한 물품)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로 이관함)

[대상 신설]

신체 보조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물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생활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경형자동차를 압류금지 재산 범위에 추가

[적용 요령]

26.1.1.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압류금지 재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압류금지 자동차는
 - ①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
 -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한함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생애 최초 주택 상시 거주 추정요건완화 등(§법36의3)	▶ 생애 최초 주택감면 - <상시거주>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다른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정	▶ 상시거주 추정요건 완화 -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정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법 §36의5)	▶ <감면대상주택>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 ▶ 사후관리 - <추징요건> 자녀와의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 - <추징배제>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등으로 상시거주 지연	▶ 1자녀당 1주택 감면 명확화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 ▶ 사후관리 - <추징요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 (상시거주 요건 삭제) (추징배제 요건 삭제) ※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추징배제 요건 불요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법 §47의4)	<신설>	▶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2028. 12. 31.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법 §58④)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 재산세 35% 감면 ※ 재산세는 조례로 15%p 상향 가능 ▶ [일몰기한] 2025. 12. 31.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취득세</th><th>재산세</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35%</td><td>20%</td></tr> <tr> <td>비수도권</td><td>50%</td><td>35%</td></tr> </tbody> </table> ※ 재산세는 조례로 15%p 상향 가능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 ▶ [일몰기한] 2028. 12. 31.	구 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35%	20%	비수도권	50%	35%
구 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35%	20%									
비수도권	50%	35%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 (법 §75의6)	<신설>	▶ [감면내용] -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5년간)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75만원) ※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28. 12. 31.									
인구감소지역주민 고용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법 §167의 5, 영 §116의3 등)	<신설>	▶ [감면내용] -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 - <적용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 ※ 고용시점에 해당 기업 소재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 - <적용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 70만원)을 고용하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 ▶ [일몰기한] 2028. 12. 31.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IV.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 1.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064
-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068
-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069
-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70
-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071
-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4
- 7.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076

1.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17 및 영§8, 지특법§29조제4항)

1.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로서 상이 등급
-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50%만 감면

2. 감면대상 및 감면을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 한함

나.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③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④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⑤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3.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4. 추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정

※ 다만, 본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특법§19)

1. 감면대상 및 감면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대상 부동산)

- 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계열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1.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 ③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 ④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2.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3. 추정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22조의2)

1. 감면대상 및 감면을

- 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최대 140만원 공제)
- 나.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경감(최대 70만원 공제)
 -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 제외

2.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3. 추정규정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정
 - ※ 다만, 1년 이내에 공동양육자인 배우자간의 이전의 경우 추정사유에서 제외

1.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지특법§35)

1. 감면대상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2. 감면율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의 주택담보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
- 이외 주택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공제
- 담보로 제공된 1가구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 25% 경감
- 담보로 제공된 1가구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한다)

3.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36조의3)

1. 감면대상자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자 (단,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취득세 면제 (300만원 한도)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3.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4. 추정규정

-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다른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

1.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36의4)

1. 감면대상 및 감면을

-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50% 경감 (전용면적 60㎡이하), 25% 경감 (전용면적 60㎡초과)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2. 일몰기한 2026. 12. 31. 까지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36조의5)

1. 감면대상 및 감면을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500만원 한도)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3. 추정요건

-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타 용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정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지특법 §58의2)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의2①)

1. 감면대상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15%) 경감
-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15%) 경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35%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15%) 경감
※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3.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4. 추정규정 (취득세)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의2②)

1. 감면대상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5%,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35% 경감

3.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4. 추정규정 (취득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46, 영§23)



1. 감면대상

-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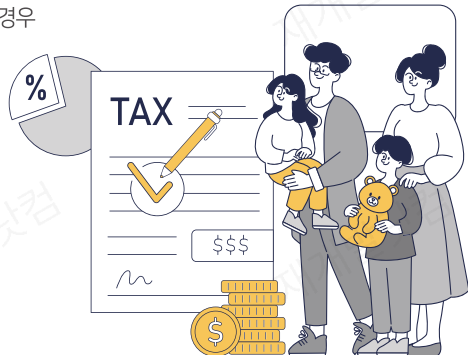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 일반기업
: 취득세 45%(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30%), 재산세 45%(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3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 취득세 35%(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재산세 35%(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취득세 60%(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 45%), 재산세 60%(인구감소지역 수도권 45%)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율 + 15% 추가 경감

3.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4.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 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지특법 §58)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하는 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①)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은 6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2. 일몰기한 2026.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②)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수도권 외 지역은 60%)

2. 일몰기한 2026.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③)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0%(수도권 외 지역은 60%)경감

2. 일몰기한 2026.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지특법 §58)



▶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지특법 §58④)

1. 감면대상 및 감면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35%)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은 20%) 경감

2.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58의3, 영 §29의2)



1. 감면대상자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감면대상 및 감면을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 ※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 ※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58의3, 영 §29의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3. 일몰기한 2026. 12. 31. 까지

4. 추정규정 (취득세)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제외

참고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지특법 시행령 §29의2)

(1) 창업일 (지특법 시행령 §29의2①)

-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2) 청년창업기업 (지특법 시행령 §29의2②)

- 대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일 것

(3)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시행령 §29의2④)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 ※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 이상인 중소기업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78)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78①~③, 영 §38)

1. 감면대상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 취득세, 재산세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15%, 재산세 1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50%, 재산세 60% 경감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1)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15%, 재산세 1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50%, 재산세 60% 경감
 - (2)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재산세 1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재산세 5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60% 경감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1)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15%, 재산세 1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50%, 재산세 60% 경감
 - (2)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재산세 1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재산세 5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60% 경감

3.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78)



4.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해당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 사업시행자 외의 자(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지특법 §78④, ⑤)

1. 감면대상자

- 사업시행자 외의 자(입주기업)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2. 산업단지 등의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3.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경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 35%, 재산세 35% 경감
 - 인구감소지역 제외한 수도권 : 취득세 50%, 재산세 60% 경감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75%, 재산세 75% 경감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78)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25% 경감
※ 취득세 :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신축 또는 증축은 25%, 대수선은 15%) 추가 경감

4.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 12. 31.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일몰기한 2028. 12. 31. 까지

6. 추정규정 (취득세, 재산세)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제외

7.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감면 (지특법57조의2제1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60% 경감

2.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함
 - 승계사업폐지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처분
 - 근로자수의 합이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7.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 특수법인의 합병에 따른 감면 (지특법 57조의2제2항)

1. 감면대상 합병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 : 취득세 면제
-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한 등기 : 등록면허세 50% 경감

3.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4. 추정규정 (취득세)

-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함.
 - 승계사업폐지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처분
 - 근로자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법인의 현물출자 및 분할에 따른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제3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 50%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취득세 50%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취득세 면제

2.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정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정
-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정

▶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제4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 : 취득세 50% 경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일몰기한 2027. 12. 31. 까지

3. 추정규정 (취득세)

- 취득일부터 5년(2018년까지는 2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정함

정당한 사유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V. 법인관련 종과세 제도



-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종과
- 2. 대도시 내 법인 종과
- 3.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종과
- 4. 세율의 적용
- 5.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080

081

083

083

084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중과(지방세법 §13①) 🔍

1. 적용 대상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택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택재산 중 위탁자가 신택 기간 중 또는 신택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3.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참고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병거계획법 §6)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2. 대도시 내 법인 중과 (지방세법 §13②)



1. 적용대상 ※ 신탁재산을 포함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참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지방세법 시행령 §26①)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 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 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참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지방세법 시행령 §26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자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 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을 건설하는 사업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

3.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중과 (지방세법 §13의2)



1. 적용 대상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법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제외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2.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외	1~3%	1~3%	8%	12%

4. 세율의 적용 (지방세법 §16)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아래의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사치성 재산) 중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증설한 것으로 봄. ※ 취득일부터 공장 신·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
-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 내 법인 중과)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 그중 높은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4. 세율의 적용 (지방세법 §16)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종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종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종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5. 대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세법 §28②, ③)



1. 종과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른 등기 ※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 적용

2. 종과제외 대상

- 대도시 종과 제외 업종 (p.81~82 참고)
 - ※ 대도시 종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종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종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과세율 적용
-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함.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으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3. 종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최저한세 : 부동산 등기(6,000원), 법인 등기(112,500원)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VI. 지방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란	086
2. 세무조사 목적	086
3. 세무조사 종류	086
4. 세무조사 법적근거	087
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088
6. 세무조사 실시	088

1. 세무조사란



-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
※ 법치사건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2. 세무조사 목적



-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을 실현

3. 세무조사 종류



1. 일반세무조사

-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2. 특별세무조사

-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3. 직접세무조사

-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4. 서면세무조사

-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5. 전부세무조사

-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6. 부분세무조사

-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4. 세무조사 법적 근거



▶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지방세기본법 §140)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및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고자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임

▶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등 (지방세기본법 §141, 지방세법 §19)

-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세 조사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음
-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기관은 매각(언부매각 포함)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청에 통보(신고)하여야 하는 바, 통보(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확인·조사하고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 규정 또한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가 됨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153)

-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한 것 이외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국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임
- 이 규정은 지방세 조사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고, 다만 부과 징수에 있어서 그 원칙과 절차 및 해설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세관련 범칙행위 처벌 (지방세기본법 §102~§114)

- 지방세 범칙사무 :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고발하는 조사활동과 관련된 사무

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기선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수시선정

-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지방세기본법 §83)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개시 20일 전까지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조사 개시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별첨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 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4)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세무조사 실시



- 연기 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개시 사유

-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조사의 기간

-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착수하고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으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 지연 등으로 기간 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결과통지

-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는 20일 이내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서면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함

※ 결과통지 생략 가능 사유

- ① 납기 전 징수사유(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개시 등) 발생 시
- ②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③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④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 ⑤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 ⑥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경우 4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외의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동봉하여 송부하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6.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절차도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VII.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092
2. 이의신청, 심판청구	092
3. 감사원 심사청구	094
4. 행정소송	094
5. 납세자 보호관 제도	095
6. 선정대리인 제도	096

1.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88)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통지

▶ 청구제외 대상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 절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 ※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결정의 종류

- 불채택, 채택, 일부 채택, 심사제외, 재조사 등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90 등)



▶ 청구대상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청구제외 대상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제외
- 지방세기본법 §121①에 따른 통고처분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90 등)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절차

1.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2. 심판청구

-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결정기간(90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없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대리인 선임의 범위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신청(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결정의 종류

1. 이의신청

- 각하, 기각, 취소, 경정, 재조사 등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함

2. 심판청구

- 각하, 기각, 취소, 경정, 재조사 등
※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준용

▶ 청구의 효력

-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3.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43 등)



▶ 청구대상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절차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도지사·시장·군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결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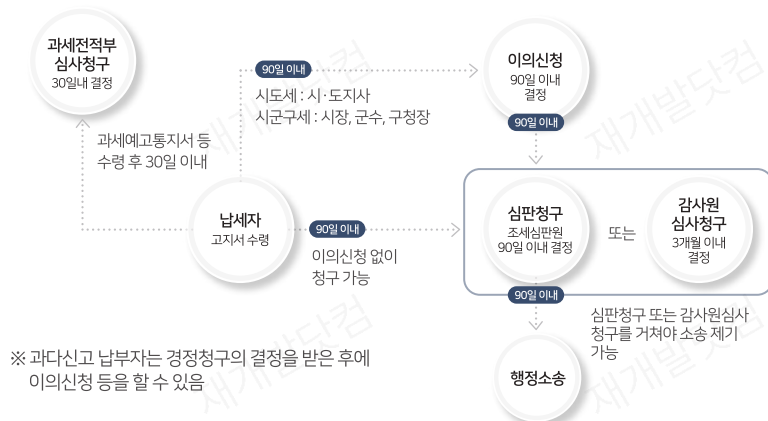
- 각하, 시정요구, 기각 등
- ※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여야 함

4.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 '21. 1. 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5.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 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5.3)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 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법 제93조의2)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 (법 제88조제2항, 제90조)
- 기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대상

- 지방세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함

▶ 선정대리인의 업무

- 선정대리인은 납세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 지원대상

신청대상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불복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신청 대상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스용자동차) 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제외 대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26 EASY-TO-UNDERSTAND LOCAL TAX GUIDE

VIII. 유용한 세금 정보



1.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098
2. 제증명 발급 안내	100
3. 지방세 체납시 제재	103
4.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104
5. 모바일 전자송달	106
6.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108
7. 마을세무사 제도	108
8. 안양시 세무상담 전화번호	110

1.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1.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 결제방법	납부 가능 시간
위택스	- URL : www.wetax.go.kr 로그인 -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 00:30 ~ 23:30 ※ 납세정보 확인 : 24시
인터넷 지로	- URL : www.giro.or.kr 로그인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365일) 00:30 ~ 23:30 ※ 일부 은행 납부가능 시간 상이
은행 홈페이지	- 납세정보 : 공동인증서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결제방법 : 해당 은행 공과금납부	▶ 은행별 상이

2. 모바일 이용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 결제방법	납부 가능 시간
스마트 위택스	- URL : smart.wetax.go.kr - 앱 설치 : "스마트 위택스" -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00:30 ~ 23:30 ※ 납세정보 확인 : 24시

3. 계좌이체 이용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 결제방법	납부 가능 시간
가상계좌	- 납세정보 : 고지서상 가상계좌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 부담	▶ 00:30 ~ 22:00 ※ 일부 은행 납부가능 시간 상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 납세정보 : 고지서상 가상계좌번호 - 결제방법 : 계좌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선택) ※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납부가능	▶ (365일) 00:30 ~ 23:30 ※ 일부 은행 납부가능 시간 상이

1.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4. 은행방문 이용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납부 가능 시간
은행창구	- 납세정보: 고지서 - 결제방법: 현금	▶ 이용시간 09:00 ~ 16:00
은행 무인공과금기	- 납세정보: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납부가능	▶ 이용시간 09:00 ~ 16:00
CD / ATM	- 납세정보: (본인)카드, 전자납부번호 등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타행카드 이용시 건당 900원 수수료 발생	▶ 은행별 기기 운영시간

5. 전화 이용 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납부 가능 시간
ARS 142-211	- 납세정보: 주민번호 - 결제방법: (음성ARS) 신용카드 (보이는ARS)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카드사 문의 ※ 휴대폰 소액 결제 불가	▶ 이용시간 07:00 ~ 23:30

▶ 자동이체 납부제도 안내

1. 자동이체란?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건당 800원을 세액 공제해 드립니다.
(자동이체+전자고지 시 1,600원 공제)

2.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팩스)신청
 -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세무과: 신분증(예금주, 신청자), 통장사본
 - 전국 모든 은행
- 전자신청은행공동인증서필요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메인화면 하단 우측의 “자동이체신청”클릭
 - 위택스(<http://www.wetax.go.kr>) : 메인화면 상단 신청의 “자동납부신청”클릭

1.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3. 자동이체 납부가능 지방세목

-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



※ 납기일(이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자동이체되며 납기 내 1회에 한하여 이체됩니다.

- 수시분 세목 : 정기분 부과세목에 대한 수시분

4. 기타 안내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하여야만 적용됩니다.

5.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 (031) 8045-3286 / FAX (031) 8045-6603
- 동안구청 세무과 ☎ (031) 8045-4398 / FAX (031) 8045-6653

2. 제증명 발급안내



▶ 세금관련 증명서 발급 안내

1. 종류별

증명서		발급기관	신청자
납세증명서 세목별	국세	전국 세무서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 위임자의 도장 - 수임자의 신분증
과세증명서	지방세	전국 시, 군, 구 세무과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자등록 증명원		전국 세무서	
휴업사실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전국 시, 군, 구청민원실	▶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 제증명 발급안내



2. 납세 관련 서류

구 분	내 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여 즉시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발급 ※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방세 납부확인서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과세관청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

※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청

3. 신청방법

구 분	방문신청 (타관할 포함)	민원24 (minwon.go.kr)	위택스 (wetax.go.kr)	무인민원 발급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2. 제증명 발급안내



4. 세금 관련 증명원 발급 인터넷 주소

사이트명	인터넷 주소	발급 가능 증명원
지방세 종합포털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 관련 증명원 ▶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 종합포털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 관련 증명원 ▶ 국세 신고·납부 안내
"정부24"	www.gov.kr/portal/main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등 모든 증명원 신청 및 발급 가능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확인)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확인) ※ 확인서 : "정부24" 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안내

- 열람 가능 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①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일 이전
 -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 임차인)
- 신청인 자격
 - ① 개인 : 임차인 본인 및 동거가족(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 ② 법인 : 대표자 및 위임받은 직원
- 열람 대상 정보
 - ① 지방세 체납액
 - 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③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구비서류 [필수] :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법인 대표자 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추가]
 - ①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 임대인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및 날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법인의 직원이 신청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문의 : 각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담당자 또는 구청 세무과 제증명 담당자

3. 지방세 체납시 제재



- 지방세를 체납하면 별도의 예고없이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 처분이 실시됩니다. 또한 각종 행정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며, 은행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절차 : 체납자의 재산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 →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

▶ 지방세 체납시 제재의 종류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납부 독촉(최고)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증가산금)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출국금지	▶ 지방세징수법 제8조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액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제9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 지방세법 제131조



4.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25%~4.57%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신고(납부)시기 및 연납 공제 내역

구 분	신고(납부) 시기	공제 혜택
1월 연세액 신고납부	1월 (1. 16. ~ 1. 31.)	연 세액의 약 4.57% 공제
3월 연세액 신고납부	3월 (3. 16. ~ 3. 31.)	연 세액의 약 3.76% 공제
6월 연세액 신고납부	6월 (6. 16. ~ 6. 30.)	연 세액의 약 2.52% 공제
9월 연세액 신고납부	9월 (9. 16. ~ 9. 30.)	연 세액의 약 1.25% 공제

2. 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구청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신청 후 말일까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위택스 접속 →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환급하여 드립니다.

3.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 (031) 8045-3292
- 동안구청 세무과 ☎ (031) 8045-4470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6. 4. 1. ~ 4. 30. (연결법인인 경우 : 2026. 5. 1. ~ 6. 1.)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Check!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3.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 (031) 8045-3857
- 동안구청 세무과 ☎ (031) 8045-4395

4.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세지 : 2025. 12. 31. 기준 납세자 주소지
- 신고·납부기한 : 2026. 5. 1. ~ 6. 1.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세무서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시청 별관 2층 홍보홀)

▶ 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 안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031) 8045-6970~2 (5월 한시적)
- 만안구청 세무과 ☎ (031) 8045-3856, 3285
- 동안구청 세무과 ☎ (031) 8045-4024, 4959

▶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2.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사업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62,500원 ~ 2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총 연면적(㎡) × 250원(330㎡ 초과 사업소)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500원) 종과세

3. 신고·납부기한

- 과세기준일 : 2026. 7. 1.
- 신고 및 납부기한 : 2026. 8. 1. ~ 8. 31.

4.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 (031) 8045-3290
- 동안구청 세무과 ☎ (031) 8045-4467

5. 모바일 전자송달



-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대상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본점)
 - 대상세목 : 정기분<등락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 연납
 - 송달수단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앱, 토스페이, 위택스 전자사서함, 이메일 등
 - 신청방법 : 해당 앱에서 신청
 - 적용시기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
 - 혜택 : 시세 800원 세액공제
 - 참고사항 : 전자송달 신청자는 종이고지서 미발행
※ 간편결제 / 카드 / 금융앱 신청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능

N p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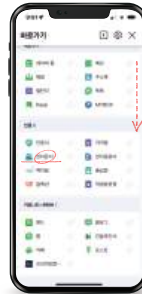
네이버페이



STEP1
네이버 앱 메인에서
왼쪽 위 상선메뉴(≡)클릭



STEP2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TEP3
전자문서 클릭



STEP4
신청하기 클릭한 후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 신청하기



STEP5
메일주소와 연락처
가입 후 확인버튼 클릭



STEP6
약관 전체 동의 클릭 후
다음 버튼 클릭



STEP7
성명과 주민번호 기입 후
확인 버튼 클릭



STEP8
신청 완료

5. 모바일 전자송달



pay
카카오페이



STEP1
카카오홈메인에서
우측하단보기(⋯)클릭



STEP2
카카오페이클릭



STEP3
상단 메뉴에서 전체 누른 후
청구서 클릭



STEP4
청구서 홈에서
전국지방세입(서울시 외) 클릭

PAYCO
페이코 앱



STEP1
페이코앱 메인에서
오른쪽 위 MY메뉴(⋈)클릭



STEP2
전자문서 클릭



STEP3
상단 메뉴에서 신청 탭에서
전국(서울 외) 지방세입 클릭



STEP4
전체 동의 후
청구서 신청

toss
토스페이



STEP1
토스앱 메인에서
오른쪽 아래 전체(≡) 클릭



STEP2
세금·납부·민원 선택 후
지방세 내기 클릭 또는
세입금 내기 클릭



STEP3
고지서 받기 클릭 후
전국(서울 외) 클릭



STEP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의하고 신청하기 클릭

6.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양시 지방세 알리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등
납세자와 1:1 채팅으로 카카오톡처럼 상담가능한 채널

간편결제 / 카드 / 금융앱 신청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능

▶ 문의

- 안양시청 세정과 ☎ (031) 8045-5545

7. 마을세무사 제도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읍, 면, 동)단위로 지정된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우리 이웃 세무사제도

▶ 상담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 신고 대행 및 신고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다운받기)을 작성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후 예약 시간을 정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 상담은 동일건당 1회, 1시간 이내 원칙

7. 마을세무사 제도



▶ 안양시 마을세무사 현황

구 분	담당동	세무사명	전화번호(Tel)	팩스(Fax)
만안구	안양1,2동	서 영 주	031-689-4122	031-689-4121
	안양3,4동	신 형 일	031-451-7538	02-502-7539
	안양5,6동	민 성 문	031-449-9898	0507-351-4411
	안양7동	고 소 영	031-399-6628	031-399-6626
	안양8,9동	안 정 현	031-360-0765	031-360-0768
	석수1동, 충훈동	김 상 민	02-6291-0111	02-6003-1998
	석수2동	원 모 연	031-426-0306	031-426-0307
	박달동, 호현동	원 성 희	031-360-4326	031-360-4328
동안구	비산1동	김 정 인	031-689-5731	031-689-5732
	비산2동, 부흥동	이 태 성	031-383-8991	031-624-9791
	비산3동, 달안동	김 태 형	031-383-4556	031-383-4557
	관양동	공 태 호	031-344-0802	070-7610-9007
	인덕원동	이 동 현	1522-5798	0507-0323-9610
	부림동	이 강 원	031-423-8577	031-423-8574
	평촌동, 귀인동	오 필 성	031-477-7155	031-477-8155
	평안동, 신촌동	염 혜 정	02-6951-0735	0503-8379-4022
	호계1동	김 문 학	031-466-3333	031-466-3223
	호계2동	이 아 영	031-689-4190	031-689-4195
	호계3동, 갈산동	정 지 예	031-8068-7795	0508-118-1053
	범계동	전 경 호	031-448-5353	0508-118-1112

8. 안양시 세무상담 전화번호



▶ 안양시 열린콜센터

TEL (031) 8045-7000

업무 내용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만안구청	동안구청
취득세	구청 세무과(도세팀)	8045-3291	8045-4499
등록면허세	구청 세무과(도세팀)	8045-3295	8045-4493
지역자원시설세	구청 세무과(도세팀)	8045-3295	8045-4499
주민세	구청 세무과(시세팀)	8045-3290	8045-4467
자동차세	구청 세무과(시세팀)	8045-3292	8045-4470
지방소득세(법인)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팀)	8045-3857	8045-4395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팀)	8045-3293	8045-4024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팀)	8045-3856, 3285	8045-4024, 495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팀)	8045-3294	8045-4466, 4454
재산세	구청 세무과(재산세팀)	8045-3288	8045-4283
부동산압류	구청 세무과(채납관리팀)	8045-3094	8045-4299
차량압류	구청 세무과(채납관리팀)	8045-3092	8045-4293
예금압류	구청 세무과(채납관리팀)	8045-3182	8045-4842
법인세무조사	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8045-5548	
개별주택가격	시청 세정과(과표전산팀)	8045-5147, 5084	
지방세체납관련	시청 징수과(기동징수팀)	8045-2588, 2184	
주정차위반체납	시청 징수과(세외수입징수팀)	8045-5072, 5077	
세외수입체납(기타)	시청 징수과(징수행정팀)	8045-5071, 5076, 5524	

2026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발행일 2026년

발행인 안양시장

발행처 안양시[세정과]

발간참여자 기획경제실장 신영수

세정과장 선연석

세정팀장 유용주

담당자 정혜원

※ 본 자료는 지방세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안양시
ANYANG CITY

세정과

TEL. (031) 8045-5545 FAX. (031) 8045-6509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www.anyang.go.kr